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김기표 · 김승원 · 이연희
김남희 · 문진석 · 한민수
권철승 · 박지원 · 백혜련
문금주 · 최혁진 · 신영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원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

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치료감호 집행자 등) ① 치료감호시설에는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피감정유치자(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라 한다)을 둔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집행자의 업무 보조를 위한 치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보조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의 제목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를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와 권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의 처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사람을 말한다)는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을”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을 “피치료감호자와 같은”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은”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피감정유치자는 피치료감호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이”를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을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안전과 질서

제31조의3(금지물품) 피치료감호자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의 위험한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피치료감호자등의 치료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31조의4(신체검사 등) ① 치료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의류·휴대품·병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피치료감호자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을 출입하는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치료감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인 치료감호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치료감호시설에 보관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⑥ 치료감호 집행자는 치료감호 보조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5(감호장비의 사용과 종류) ① 치료감호 집행자와 치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등”이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안(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치료감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이하 “감호장비”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 보조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등의 생명 ·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이 도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제31조의6(전자장비의 설치·운영)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의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치료감호자등의 보호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치료감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여성인 피치료감호자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치료감호 집행자등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보호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 밖의 장소로 피치료감호자등을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큰 때
 3.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때
-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안에서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 의사는 그 피치료감호자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발목보호장비
5. 억제대
6. 보호복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제31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 제31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4. 억제대·보호복: 제31조의7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보안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을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치료감호 집행자등 또는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치료감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치료감호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안(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밖에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11(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보안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가스총
3. 전자충격기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가스총: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가스총: 제31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④ 보안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보안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2(재난 시의 조치)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집행자”를 “집행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를 각각 “치료감호 집행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총기·도검·폭발물·독극물·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 또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를”을 “제31조의 3에 따른 금지물품을”로, “피치료감호자”를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치료감호자에게”를 “피치료감호자등에게”로, “피치료감호자와”를 “피치료감호자등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3(치료감호 집행자 등)</u> ① <u>치료감호시설에는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피감정유치자(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라 한다)을 둔다.</u> ② <u>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집행자의 업무 보조를 위한 치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보조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③ <u>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④ <u>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제4장 <u>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u>	제4장 <u>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와 권리</u>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
자와 같은 치료감호시설에 수
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
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분
리하여 수용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
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처우를 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청
구인에 대한 처우의 구체적 기
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의 처우) ① 피치
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사람을 말한다)는 피치료감호
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

-----피치료감호
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를---

1. 2. (현행과 같음)

② -----피치료
감호자와 같은-----피치료감
호청구인 또는 피감정유치자는
피치료감호자와--.

③ -----피치
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
가-----

-----.

④ -----피치료감호청
구인 및 피감정유치자-----

-----.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피치

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치료감호
자등의 신체를 묶는 등으로 직
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1호
의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
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
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
한다.

<신설>

<신설>

료감호자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장의2 안전과 질서

제31조의3(금지물품) 피치료감호

자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
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
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
· 흉기·독극물, 그 밖의 위
험한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
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
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
가 있는 물품
 3. 주류·담배·화기·현금·
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
는 물품, 그 밖에 피치료감호
자등의 치료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제31조의4(신체검사 등) ① 치료
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의류
· 휴대품·병실 및 작업장 등
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
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

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피치료감호자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을 출입하는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치료감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인 치료감호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치료감호시설

<신 설>

에 보관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
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⑥ 치료감호 집행자는 치료감
호 보조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5(감호장비의 사용과 종
류) ① 치료감호 집행자와 치
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등”이라 한다)는 치료감
호시설 안(치료감호 집행자등
이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피치
료감호자등을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치료감호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그 부
속품(이하 “감호장비”라 한다)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3제2
항에 따른 치료감호 보조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
호 집행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피치료감호자등의 생

<신 설>

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이 도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제31조의6(전자장비의 설치·운영)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의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치료감호자등의 보호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3. 치료감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
비로 여성인 피치료감호자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치료감
호 집행자등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
자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
·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보호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

<신 설>

<신 설>

호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 밖의 장소로 피치료감호자등을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큰 때
3.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대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안에서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 의사는 그 피치료감호자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신 설>

<신 설>

4. 발목보호장비

5. 억제대

6. 보호복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제31조의7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 제31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4. 억제대·보호복: 제31조의7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보안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설비·기구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을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치료감호 집행자등 또는 피
치료감호자등에게 위해를 끼
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는 때

4. 치료감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
는 때

5. 치료감호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안(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밖에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계
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치료감호 집행
자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
안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1조의11(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보안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가스총

3. 전자충격기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가스총: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제52조(벌칙) ①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u>집행자</u>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u>가스분사기·가스총: 제31조</u> <u>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u> 2. <u>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2</u> <u>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u> <u>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u> <u>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u> <u>는 때</u> ④ <u>보안장비의 사용은 필요한</u> <u>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u> ⑤ <u>보안장비의 사용절차 등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u>제31조의12(재난 시의 조치) 치</u> <u>료감호시설의 장은 천재지변이</u> <u>나 화재, 그 밖의 사변에 대한</u> <u>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u> <u>피치료감호자등을 다른 장소로</u> <u>이송할 수 있다.</u> 제52조(벌칙) ① ----- -----<u>집행자등</u>----- ----- ----- ----- -----.
---	---

② (생략)

③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하고 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
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총기 · 도검 · 폭발물 · 독극물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 · 담배 · 화기 · 현금 · 수표 · 음란물 또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 사용 · 수수(授受) · 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

-----.

④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

-----.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_____

1. 제31조의3에 따른 금지물품
을

-----피치료감호

자등

2. <u>피치료감호자에게</u> 전달할 목적으로 금지물품을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 거나 <u>피치료감호자와</u> 금지물 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 ⑪ ~ ⑬ (생 략)	2. <u>피치료감호자등에게</u>----- ----- ----- ----<u>피치료감호자등과</u>----- ----- ⑪ ~ ⑬ (현행과 같음)
---	--